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0748 |
|----------|-------|

발의연월일 : 2017. 12. 11.

발의자 : 박남춘 · 김현권 · 조승래

김영호 · 박찬대 · 김정우

표창원 · 윤관석 · 유은혜

전해철 · 김종훈 · 최인호

설훈 · 이재정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이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져 범죄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조(직무의 범위) -----<br>-----.              |
| 1. · 2. (생략)<br><u>&lt;신 설&gt;</u> | 1. · 2. (현행과 같음)<br><u>2의2. 범죄피해자 보호</u> |
| 3. ~ 7. (생략)                       | 3. ~ 7. (현행과 같음)                         |